

의안번호	제 104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0
----------	------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일을 현행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변경하여 추정기산일과 일치시킴에 따라, 시각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일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 (안 제2조)
 - (현행) 취득일(취득하는) → (개정) 등록일(취득하여 등록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납부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 조문 제목 변경 (안 제13조)
 - (현행)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개정)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범위 상향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액 인상 (안 제13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을”을 “제3항을”로, “감면을 신청하는”을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제13조의 제목 “(자동차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현행	개정안
<p><u>「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p>1.·2.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u></p>

현 행	개 정 안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u>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u></p>	<p>⑥ 제3항을 -----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 ----- -----.</p>
<p>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u>세액공제</u>)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고지서 1장당 <u>300원</u></p> <p>② (생략)</p>	<p>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u>세액공제</u>) ① ----- ----- ----- ----- -----.</p> <p>1. ----- ----- <u>250원</u></p> <p>2. ----- ----- <u>5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92조의2(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20. 1. 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

2. 비용발생 요인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에 따른 세입감소(감면액 증가)

3.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범위 인상에 따라, 도세 세액공제 감면 확대 (안 제13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감면건수 : 최근 4년(2018년~2021년) 감면건수 평균 증감을 반영 추산
- 감면기준금액 :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모두 공제 가정(최대치)
- 추계기간 : 향후 5년(2022년~2026년)

나. 추계 결과 : 5년간 총 22백만원 세입감소할 것으로 추정

- 산출과정 : 현행조례 기준 세액공제액 - 개정조례안 기준 세액공제액
= 감면건수 × (현행 세액공제액* - 개정 세액공제액**)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 1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모두 신청 : 300원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모두 신청 : 500원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감소액 (A-B)	△3	△4	△4	△5	△6	△22
현행조례 (A)	4	5	6	7	9	31
개정조례안 (B)	7	9	10	12	15	53

다. 재원조달방안 : 세제감면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 입	△3	△4	△4	△5	△6	△22
지방세수입	△3	△4	△4	△5	△6	△22
세 출	-	-	-	-	-	-
-	-	-	-	-	-	-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김주희